

# 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모펀드 운용역 변경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결 산	변 동 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주 1)	○	주 1)	-	-	6), 7)
2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30 증권투자회사 2 호(채권혼합)	주 1)	-	주 1)	-	-	-
3	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 3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주 2)	-	-	-	-	-
4	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주 2)	-	-	-	-	-
5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 TIF 혼합자산투자신탁	주 2)	-	-	-	-	-
6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주 2)	-	-	-	-	-
7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주 2)	-	-	-	-	-
8	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주 2)	-	-	-	-	-
9	미래에셋자산관리 TIF 혼합자산투자신탁	주 2)	-	-	-	-	-
10	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주 2)	-	-	-	-	-
11	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주 2)	-	-	-	-	-
12	미래에셋평생소득 TIF 혼합자산투자신탁	주 2)	-	-	-	-	-
13	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)	-	○	주 2)	○	○	6), 7), 8)
14	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-	○	○	6), 7), 8)
15	미래에셋미국인덱스 EMP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○	-	○	○	-
16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	-	-	-	○	○	-
17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16 호	-	-	-	○	-	-
18	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투자신탁 1 호(H)(채권)	-	-	-	○	-	-
19	미래에셋법인전용 MMFA-4 호	-	-	-	○	○	-
20	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신탁 1 호(H-USD)(주식-파생형)	-	-	-	○	○	8)
21	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신탁 1 호(UH)(주식)	-	-	-	○	○	8)
22	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-	○	○	-
23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○	○	-
24	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 K-1 호(주식)	-	-	-	○	-	-
25	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50 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-	-	○	-
26	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○	8)

## 2. 변경 사항:

- 1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- 2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3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- 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7) 법 개정사항 반영
- 8) 이해관계인 삭제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08월 11일(금)

4. 변경 내용:

1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
[투자설명서]

주1)
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서재춘(책임), 김지열(책임), 권혁범(부책임)	서재춘(책임), 권혁범(책임), 구본원(부책임)

주2)
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김지열(책임), 권혁범(부책임)	권혁범(책임), 구본원(부책임)

2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 자산 등)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&lt;생략&gt;</p> <p><u>3. &lt;신설&gt;</u>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&lt;생략&gt;</p> <p>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
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&lt;생략&gt;</p> <p><u>3. &lt;신설&gt;</u></p> <p>4.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&lt;생략&gt;</p> <p>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 <p>4.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3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주1)
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 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주2)

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 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<투자비용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 무 및 운용실적 등 에 관한 사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 래내역	-	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

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)	1	1	<u>30.15</u>	<u>25.17</u>
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0.65</u>	<u>18.69</u>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	2	2	<u>24.72</u>	<u>18.75</u>
미래에셋미국인덱스EMP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2	2	<u>20.77</u>	<u>16.16</u>
미래에셋법인전용MMFA-4호	6	6	<u>0.05</u>	<u>0.15</u>
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신탁1호(H-USD)(주식-파생형)	2	2	<u>19.66</u>	<u>18.73</u>
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신탁1호(UH)(주식)	2	2	<u>20.12</u>	<u>21</u>
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2.4</u>	<u>3.11</u>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6.31</u>	<u>17.37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5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<u>2</u>	<u>3</u>	-	<u>11.07</u>
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투자신탁(주식)	<u>1</u>	<u>2</u>	<u>30.31</u>	<u>20.57</u>

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 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7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 ②~③ <생략> 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 ②~③ <생략> 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8) 이해관계인 삭제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u>- 신탁업자 : 국민은행</u>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u>&lt;삭제&gt;</u>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**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**

**1. 경력**

1) 성명: 권혁범 선임매니저

2) 주요 경력

(15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/리서치부문

**2. 운용 현황(2023.07.31. 현재)**

투자신탁명	설정일	설정액(백만원)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0-10-28	157,874
미래에셋가치주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0-10-28	59,173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30 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2021-04-06	43,845

**3. 운용성과(2023.07.31. 현재, 기간별 수익률, %)**

투자신탁명	1개월	3개월	6개월	설정 이후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0.47	3.23	5.92	138.79
미래에셋가치주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.83	12.39	18.27	204.62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30 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0.13	1.31	2.68	-1.05

**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**

**1. 경력**

1) 성명: 구본원 매니저

2) 주요 경력

(21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/리서치부문

**2. 운용 현황(2023.07.31. 현재)**

해당사항 없음

**3. 운용성과(2023.07.31. 현재, 기간별 수익률, %)**

해당사항 없음